

제425회 임시회

'25. 4. 22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노출에 대응한 안전관리가 요구됨.
-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을 위해 급식시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및 운용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(방사성물질, 급식시설)의 뜻을 규정함. (안 제2조)
-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 (안 제4조)
-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을 두고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함. (안 제5조)
-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
- 방사성물질 검출 시의 조치 및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3조, 제14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,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- 특히 방사성물질 노출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- 급식 식재료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도록 검사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,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식시설 이용자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총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.

	조항	규정내용(조 제목)
총칙규정	제1조	목적
	제2조	정의
	제3조	도지사의 책무
실체규정	제4조	검사계획의 수립·시행
	제5조	담당기관의 운영 등
	제6조	정기 및 수시검사 등
	제7조	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
	제8조	위원회의 구성
	제9조	위원의 임기
	제10조	위원장의 직무
	제11조	위원회 회의 등
	제12조	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
	제13조	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
보칙규정	제14조	정보 공개
	제15조	협력체계 구축
부칙규정	부칙	시행일

- 안 제2조는 "방사성물질"과 "급식시설"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
 - "방사성물질"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방사성 핵종인 세슘, 요오드, 삼중수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
 - "급식시설"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.

-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사성물질 검사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검사 계획의 수립, 담당기관 지정, 정기 및 수시검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 - 급식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필요시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.
 - 검사항목을 세슘, 요오드로 명확히 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함.

-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'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'의 설치와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.
 -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학부모단체, 환경 단체, 교육단체, 학계 전문가, 도의회 추천 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함. 또한,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하로 구성하였음.
 -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, 임기,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-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방사성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의 조치사항과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.
 - 또한, 검사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·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

-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,
-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서 의미가 있음
-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고, 정기적인 검사와 결과 공개를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 검사체계 구축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- 다만, 담당기관 및 부서에서는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인력·장비·예산 확보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·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-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급식시설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,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